

	연계교육사업 자체평가 규정	제 정 일	2026. 10. 1.
		개 정 일	
		개정차수	차
		담당부서	연계교육사업단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「직업계고-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선도대학 지원사업」(이하 “연계교육사업”이라 한다)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,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·관리하여 사업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평가대상) 자체평가는 연계교육사업의 사업계획, 사업운영, 사업성과 및 성과관리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.

제 3조 (평가기준) 자체평가의 평가영역, 평가지표, 평가방법 및 평가등급 등의 기준은 해당 사업의 지침에 따르며, 사업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 4조 (평가지기) 자체평가는 매 학년도 중간 및 학년도 말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구체적인 평가지기는 해당 사업의 지침에 따른다. 단, 사업 시행 첫 해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.

제 5조 (평가방법) ① 연계교육사업단은 자체평가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자체평가를 실시한다.

② 연계교육사업단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,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제 6조 (연계교육사업 자체평가위원회) ① 자체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자체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계교육사업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자체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연계교육사업단장으로 하며, 위원은 본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계교육사업의 자체평가 결과

2. 연계교육사업의 개선과제 및 환류사항

3. 그 밖에 자체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⑥ 자체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⑦ 자체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연계교육사업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.

제 7조 (평가결과의 활용) ①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본교 및 협약고등학교에 공유하고 사업계획 수립, 사업운영 개선 및 교육의 질적 향상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
② 자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한 학과 및 협약고등학교에 대하여 행·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 8조 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